

2024학년도 2학기 법학과 졸업시험 안내

1. 졸업시험 일정

- 1차 시험 - 11월 07일(목) 18:00~20:00
- 2차 시험 - 11월 21일(목) 18:00~20:00 [재시험]

2. 장소

- 응시자 명단 파악 후 공지 예정
- 가대톡/학과 홈페이지 공지 수시 확인

3. 신청기간

① 졸업시험 신청 : ~10/31(목)까지

- 기간 내에 신청한 학생에 한해서만 졸업시험 응시 가능(기간 이후 신청 불가/ 신청 없이 졸업시험 불가)

② 면제 신청 : ~12/13(금)까지

- 11/1(금) 부터는 졸업시험을 제외한 면제신청만 가능
- 11/1(금) 이후 면제받지 못한 과목에 대한 졸업시험 신청은 불가함!

4. 신청 대상

- 4학년 1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 조기졸업 대상자(본인 학년, 학기는 트리니티에서 확인 가능)
★ 4-1학기 학생의 트리니티 성적반영은 4-2학기 때 된다는 점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 법학과 졸업시험은 1전공, 2전공 학생 모두에게 적용되는 졸업요건입니다.
취업자 및 기타시험 합격자도 반드시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취업으로 인한 면제 불가)

5. 서류제출 방법

- 법학과 사무실로 직접제출 또는 메일(law26@catholic.ac.kr)로 제출
↳ 서류 확인하였다는 답장메일 발송하니, 답장이 계속 오지 않는 경우 과사로 확인바람.

6. 졸업시험 유의 사항

- 법전 및 기타 서적은 참고 불가
- 연필, 샤프 등 지워질 수 있는 필기구 사용금지. 반드시 검은색 펜으로 답안 작성
- 시험 중 전자기기(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기기 등) 사용 적발 시 F처리
- 직장 등의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시험에 지각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과사무실 문의
- 매 학기 시험 횟수는 본시험/재시험 2차로 제한하며, 불합격할 경우 다음 학기에 응시해야 함

※ 졸업시험 점수 및 등급

졸업시험 통과		재시험 필요		재시험 불가
100~90점	89~80점	79~70점	69~60점	59~0점
A	B	C	D	F

7. 졸업요건 및 신청방법 안내

※ 자세한 졸업요건은 법학과 홈페이지에서 '법학과 졸업요건' 공지 확인

▣ 졸업시험

- ✓ 졸업시험은 3과목으로 헌법, 민법, 형법 각각 1문제씩 응시하며 **3과목 모두 통과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 ✓ 1차, 2차 총 2번에 걸쳐 진행되며, 1차에서 C, D 점수를 받은 학생은 2차(재시험)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B점수를 받은 학생도 재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A, F 재시험 응시불가 / 3과목 중 본인이 불합격한 과목만 재시험)

▣ 졸업시험 면제

- ✓ 영어성적 및 학술제 수상으로 졸업시험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공인된 영어성적으로 졸업시험 과목 면제 신청**
 - ① 신청서와 함께 영어성적 증빙서류 제출
 - ② TOEIC 외 영어시험 성적: 공인된 기관의 TOEIC 점수환산표와 함께 제출
 - ③ 유효기간 상관없음
- (2) **학술제 수상으로 졸업시험 과목 면제 신청**
 - ① 신청서에 학술제 수상내용만 기재하여 제출

▣ 유의사항

- 졸업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졸업시험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없이 졸업시험 응시 및 면제 불가"
- 면제 중복합산 가능
ex. 학술제 우수 2과목 면제 + 학술제 장려 1과목 면제 = 3과목 면제
학술제 우수 2과목 면제 + 토익 650점 1과목 면제 = 3과목 면제
토익 700점 2과목 면제 + 토익 650점 1과목 면제 = 3과목 면제

서류 미제출로 인해 졸업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졸업시험 예상문제]

1. 민법

(1) 민법 제1조는 다음과 같다.

제1조(법원)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민법의 법원에 대해 논하시오.

(2)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해 논하시오.

(3)유동적 무효에 대해 논하시오.

2. 형법

(1)죄형법정주의에 대해 논하시오.

(2)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해 논하시오.

(3)형법 제10조는 다음과 같다.

제10조(심신장애인)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를 참고하여,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 논하시오.

3. 헌법

(1)민주주의원리의 기본이념과 실현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헌법상 대한민국 정부형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